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

#### I.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176호
- 발의자 : 박승진 의원(찬성의원 13명)
- 발의일자 : 2025년 10월 20일
-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 II.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까지 포괄적으로 강화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과의 협력을 명문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III. 주요내용

-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지원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명을 변경함
- 시장의 신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교육감과의 협력 강화를 규정함(안 제8조제1항)

#### IV.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 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담보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뜻의됨.

### 2. 개정안의 입법 배경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는 지난 2012년 고등학교졸업자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모법으로 제정되었음.
- 동 조례를 근거로 2024년에 23개 투출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총 1,347명 중 고등학교졸업자 212명(15.7%)을 채용하고, 2025년도에 서울시 기술직 9급 공무원 31명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채용하였지만, 서울시 고등학교 졸업자의 전반적인 고용 촉진에는 부족한 수준임.
-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전국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 자료에 따르면<sup>1)</sup>, 서울시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고등학교 졸업자를 배출하고 있으나, 취업률은 50.4%로 전국 평균 취업률 55.2%에도 못 미치는 상황임.
- 이와 같이 현재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직업의 안정성과 취업의 지속성 또한 담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각층으로부터

---

1)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제기되고 있는바, 동 조례안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서울시교육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정규 교육과정에서 취업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임.

### < 시·도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후 상황 >

2025. 4월 기준

구분	학교수	졸업자	취업자 현황		진학자 현황		입대자	제외 인정자	미취업자
			취업자	취업률	진학자	진학률			
서울	72	8,809	2,062	50.4	4,419	50.2	170	127	2,031
부산	36	4,729	1,146	55.3	2,567	54.3	54	37	925
대구	20	3,387	970	67.8	1,825	53.9	116	16	460
인천	29	3,480	955	55.7	1,606	46.1	56	103	760
광주	13	1,804	403	53.5	969	53.7	39	43	350
대전	12	1,631	476	60.7	751	46.0	80	16	308
울산	11	1,540	483	60.3	661	42.9	48	30	318
세종	3	190	55	59.8	95	50.0	0	3	37
경기	108	12,480	2,730	50.3	6,576	52.7	182	299	2,693
강원	31	1,744	475	54.6	804	46.1	57	13	395
충북	26	2,905	723	55.4	1,512	52.0	35	54	581
충남	38	3,139	953	58.2	1,337	42.6	87	78	684
전북	32	2,250	540	51.6	1,023	45.5	117	64	506
전남	46	3,319	727	53.4	1,809	54.5	105	43	635
경북	54	3,906	1,498	63.9	1,235	31.6	273	55	845
경남	35	3,139	895	55.9	1,409	44.9	81	48	706
제주	9	1,209	205	52.4	775	64.1	23	20	186
전체	575	59,661	15,296	55.2	29,373	49.2	1,523	1,049	12,420

1. 조사기준일 : 2025년 4월 1일
  2. 졸업자 : 2025년 1월 및 2월 졸업자
  3. 취업자 : 보험가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4. 보험가입자 : 건강보험(직장)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 보험가입자에는 '21년 7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의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됨
  5.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 × 100
  6. 진학률(%) = (진학자 / 졸업자) × 100
- ※ 해외취업자 : 조사기준일 당시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한 비자를 취득하고, 해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는 자

### 3. 개정안의 주요 조문별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부터 목적,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안정 및 서울특별시교육감과의 협력에 관한 규정 등 8개 조문을 개정하고 있으며, 개정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 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 >

변경 내용	변경 조항
제명의 변경	제명
고용안정 규정의 추가	제1조(목적) 제3조(책무)제1항~제2항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1항, 제1항제1호~7호 -제2항 -제2항제2호(신설)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자구수정	제2조(정의)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제2항~제3항
교육감과 협력 규정 명문화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1항~제2항

#### 가. 제명과 목적의 변경(제명 및 안 제1조)

- 동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목적) 중 ‘일자리 창출을 촉진 하여’를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조례	개정안
<p><u>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u>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u>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u>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여</u> -----.</p>

- 이와 같이 조례의 제명 및 목적 조항의 개정은 기존의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에 한정되었던 조례의 제정 목적을 취업 후 고용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지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의 안정성 및 취업 지속률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면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하겠음.
  - 다만 동 개정조례안은 조문 전반에 걸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서도 고용안정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고용 촉진과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가 의문임.

#### 나. 고용안정에 관한 지원(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안정 및 이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조례	개정안
<p>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p>	<p>제3조(책무) ① ----- ----- 고용 촉진과 고용안정 등이 이루어지도록 -----.</p>

②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과 기업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 및 고등학교졸업자 인력 수급 동향
  2.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 계획
  3.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4.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생략)
  7.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신 설〉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및 지원 계획의 수립) ① -----  
촉진하고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기 -----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및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

1. ----- 고등학교졸업자의  
현황 및 --
  2.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  
안정화 지원에 관한 목표와 시행계획
  3. ----- 고등학  
교졸업자의 -----
  4.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 안  
정화를 -----
  5. 직업 교육 및 지도-----  
-----
  6. (현행과 같음)
  7. ----- 고용촉  
진 및 지원-----
  - ② ----- 제1항에 따른 계획의 -----  
----- 계획에 -----

제4조의2(지원사업)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  
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 안정화를 위한 지원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취업 후학습에 관한 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및

<p>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9조(행정적 · 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과 기업에 대해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① ----- 계획 수립 및 제4조의2에 따른 지원사업-----.</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행정적 · 재정적 지원) ① -----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등의 지원-----.</p>
---	---

- 현재 취업시장은 경력직을 중심으로 채용이 선호되고 있으며, 대학교졸업자 대비 고등학교졸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고등학교졸업자는 대학교졸업자의 약 74% 수준의 임금을 받고, 안정적인 전일제 근무보다 시간제 근무 형태가 많으며 조기퇴직, 정리해고 비중도 높은 편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및 근무 현황 >

- 10년 평균(2014~2023) 고용률: 고등학교 졸업 61.9%, 대학교 졸업 75.2%
- 10년 평균(2014~2023) 실업률: 고등학교 졸업 3.8%, 대학교 졸업 3.2%
- 첫 입직 소요기간(2024년 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7.7개월, 대학교 졸업 이상 8.4개월
-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대비 72~74% 수준(OECD 'Education at a Glance')
- 전일제 비중: 고등학교 졸업 이하 66.5%, 대학교 졸업 이상 81.3%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경제실, 2024.10)

- 이에 안 제4조 및 제4조의2는 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이나 선취업 후학습에 관한 정보안내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활동뿐만 아니라 취업 후 학습 지원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됨.

#### 다. 서울특별시교육감과의 협력(안 제8조)

- 안 제8조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과 지원을 위해 시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이외에 서울특별시교육감과도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조례	개정안
<p>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p>	<p>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 ----- ----- -----.</p> <p>② ----- 서울특별시교육감, 중앙행정기관 및 ----- ----- -----.</p>

- 이는 현행 조례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과 관련된 협력 대상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은 포함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의 주무기관인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양질의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졸업 후 행정기관의 지원에 앞서 고등학교졸업자의 학령기 교육과정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안 제8조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고등학교졸업자 취업과 관련한 상호 정보 교환 등 면밀한 교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입법조사관	연락처
이성찬	02-2180-8061